

대법원 2021. 10. 14 선고 2021다247517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1. 10. 14 선고 2021다247517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6. 16 선고 2020나1891 판결

전 문

원고, 피상고인 A

피고, 상고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

판 결 선 고 2021. 10. 14.

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6. 16. 선고 2020나1891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노태악, 주 심 대법관 박정화, 대법관 김선수, 대법관 오경미